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과제 공모 (양자간 국제공동연구사업)

충청북도의 전략적 특화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혁신주체와 국외 우수 연구기관 및 기업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대상 과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충청북도지사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이란 충청북도의 특성화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연구기관 육성, 인력양성, 고용창출 등을 집중 지원하여 충북 바이오산업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 I. 지원분야 및 유형

### 가. 지원분야

- 외국 기업·대학·연구소와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해외시장 진출 효과가 높고 단기간 내에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제2조에 의한 사업

### 나. 지원유형

- 외국 R&D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외국과 개발비 분담을 통해 공동연구하는 경우 (국내와 국외 상호간 1:1매칭 사업이어야 함)

### 다. 유의사항

- 신규 지원과제 신청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상대국 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해야 함
  - 국외기관의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 도비 부담액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또는 현물 부담
  - 연구성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 II.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사업장, 연구소) 기관·단체·기업
- 도비지원 : 연간 0.6억원 이내 (2개 과제)
- 사업기간 :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은 도비의 20% 이상
- 지원방식 : 당해연도 또는 다년도 협약(다년도 협약 시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III. 신청요령

### 가.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현재, 도내에 본사·사업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한 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 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등(도내 소재)

###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안내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홈페이지(<https://osongbaio.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충북바이오션 홈페이지(<https://biotion.or.kr>) → BIO 지원사업 → 충청북도 통합 바이오 지원사업 안내
- 신청서 제출서류(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1 바이오 국제공동연구 사업계획서(총괄, 세부과제)
  - 2 참여기업의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참여 의사 확인서(기술료징수용)
  - 3 주관기관/참여기관의 현금·현물 부담확약서
  - 4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인건비 산정기준 확인서
  - 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종 포상관련 서류(사본)
  - 7 세무서 부가세 신고서류 등 매출실적증명서(기업에 한함)
  - 8 주거래 및 부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 (기업에 한함)
  - 9 공장등록증, 재무제표(최근 2년간, 비영리기관 제외), 손익계산서 각 1부(기업에 한함)
  - 10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11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
  - 12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목록 1부

○ 관련규정(홈페이지 게재)

-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운영요령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20.(월) ~ 2026. 4. 30.(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업계획서 및 서류 E-mail 제출)

- 온라인 접수 : [jspark@cbio.or.kr](mailto:jspark@cbio.or.kr)

- 원본 1부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SB플라자 410호

다. 유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확정 통보일로부터 도비의 40% 이내(대기업 4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0%)를 3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 기술료 완납시 납부금액의 40% 감면)

- ※ 대학 및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기술료 면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유사과제”에서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람(회원가입 요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 완전자본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일정 기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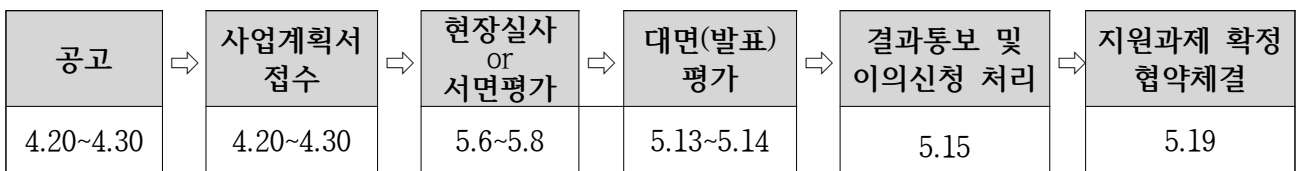
초과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의 경우(연구책임과제 3개, 연구개발과제 5개)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제외함)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설연구소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 사업신청시 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내용을 합의한 증빙서류(MOU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IV. 평가 및 일정

-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항목 : 목표설정(40), 추진체계(40), 성과 활용계획(20)
  - 목표설정 : 관련기술 현황분석, 사업추진 필요성, 자원조달계획 및 사업비 구성
  - 추진체계 : 총괄기관 추진체계,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구성, 세부과제 구성의 적정성
  - 성과 활용계획 : 성과측정지표, 성과활용계획
- 일정
  - 신청서 접수 : 2026. 4. 20.(월) ~ 4. 30.(목) / 11일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V.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홈페이지(<https://osongbaio.or.kr>)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접수기관) 043) 220-1000